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인권

건국대 법대  
BK21 인권사업팀  
WORKSHOP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인권

-한국내 화교의 법적 지위-

일시 : 2000년 11월 24일(금) 1:30~6:00pm  
장소 : 건국대학교 본관 화상회의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Mj1.6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인권사업팀

건국대 법대  
BK21 인권사업팀  
**WORKSHOP**

## 세계화 시대에 있어서의 인권

-한국내 화교의 법적 지위-

일시 : 2000년 11월 24일(금) 1:30~6:00pm  
장소 : 건국대학교 본관 화상회의실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BK21 인권사업팀

## 일정표

### 축사

제 1 세션 한국내 화교의 법적 지위 -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 이근관(건국대 법대)

발 표 1:30 ~ 2:30 김경득(재일교포 변호사)..... "재일교포의 법적지위"  
양필승(건국대 인문학부 사학과)..... "한국내 화교의 법적지위"  
지정토론 2:30 ~ 2:45  
토 론 2:45 ~ 3:30

휴식 3:30 ~ 3:45

제 2 세션 한국내 수형자의 법적지위 사회 이승호(건국대 법대)

발 표 3:45 ~ 4:45 박찬운(변호사)..... "일본에 있어서의 행정관련 소송의 전개"  
유득형(인권운동가)..... "수형자의 집필권에 관한 사례보고"  
이승호(건국대 법대)..... "수형자의 변호인 접견권"  
지정토론 4:45 ~ 5:00  
토 론 5:00 ~ 6:00

### 폐회사

## 목 차

## SESSION 1 : 한국내 화교의 법적 지위

- 제일교포의 법적지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 이근관 교수(건국대 법대)

### 〈발표문〉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과제 ..... 김 경 득 1
  -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 양 필승 7

### <참고자료>

- |  |     |
|--|-----|
| · 永住外國人에 대한 地方公共團體 議會 議員 및 長의 選舉權 등의 부여에 관한 法律案(公明黨, 保수守黨 案) ..... | 21  |
| · EC Treaty(Maastricht) .....                                      | 57  |
| · Council Directive 94-80 .....                                    | 59  |
| · 외국인의 참정권(외국인 선거권 현황과 외국인의 국정선거권)… (長尾一絃, 外國人의 參政權, 世界思想社, 2000)  | 67  |
| · 재일한국인 지방참정권 문제(외교 통상부) .....                                     | 95  |
| · 화교와 관련된 신문자료 .....   | 101 |

#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와 과제

金敬得

## 一. 재일한인사회의 국적별 인구구조

### 1. 한국적·조선적 재일한인

재일한인은 일제식민지지배의 결과 일본에 살게 된 사람들이다.

한일합방조약의 천년인 1909년에는 불과 790명에 지나지 않았던 재일한인수는 한일합방조약 이후 급증하여 해방당시에는 200만명을 넘었다.

해방되자 다수의 재일한인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집단귀환이 종료한 1946년 말에도 약 50만명에 이르는 한인이 남아있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한일합방조약에 의해서 한반도는 일본영토로 되고 한국사람은 일본국민으로 되었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일제하에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사람은 일본국민으로서 살고 있었다.

해방직후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게 국적선택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고 국회에서 답변하고 있었지만 그후 재일한인은 독립에 의해서 당연히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답변하기에 이르렀다.

일본국적 상실후 재일한인의 재류자격은 1952년 법률 제126호 해당자, 한일법적지위협정(1965)에 의한 협정영주권자를 거쳐 지금은 1991년의 한일외무장관 각서에 의해 제정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1991년 법률 제71호)에 의한 특별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다.

1999년말의 한일특별영주권자는 517.787명이다(한인 외국인등록수는 636.548).

### 2. 귀화한 재일한인 수

재일한인의 귀화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일인 1952년 4월 28일부터 시작했고 (재일한인의 귀화는 공무원으로부터 시작했다) 98년말까지의 한국인 귀화자 총수는 약 23만명이다.

### 3. 한인과 일본인 사이에 출생한 재일한인 수

해방후 한국국적(북한국적 포함) 보유자간의 혼인 건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반면에 일본국적자와의 혼인이 많아지고 있다.

일본은 아이의 국적취득에 관해서 부계혈통주의를 채용해오다가 85년부터 부모양계주으로 바꾸었다.

1955년부터 96년까지의 일본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의 혼인 총건수는 약 11만건이다. 그

부부사이에 평균 2명의 자가 태어났다고 가정하면 약 22만명이다. 그 아이들은 일본국적이지만 한국인 모의 혈통을 이어 받은 사람들이다.

1985년 1월 1일부터 일본은 국적법은 개정하여 부모양계주의를 채용했다. 그 결과 85년 이후는 일본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뿐만 아니고 한국인 남자와 일본인 여자사이에 태어난 자도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후자의 경우 그 아이는 한국국적도 취득함으로 한·일 이중국적자로 되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인 모의 호적과 주민표에 들어가고 한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은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외국인등록은 일본국적 없는 사람만이 하기로 되어있는 바 이중국적자는 일본국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국내에서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일본국민으로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중국적자도 일본국민으로서 참정권, 공무취임권, 여권발급, 사회보장 등 모든 면에서 국민으로서의 완전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1998년 6월 14일에 한국국적법도 부모양계주의로 개정·시행되고 그날부터는 일본인 남자와 한국인 여자사이에 태어난 자도 한일 이중국적자로 된다.

일본도 한국도 국적법을 부모양계주의로 개정했을 때 국적선택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의 국적선택제도는 일본의 국적선택제도보다 엄격하다(국적의 강제정리제도).

#### 4. 한국적·조선적의 감소와 일본적의 증가

1984년의 재일한국인의 출생자 총수는 9,362명인데 비해 85년도의 출생자수는 4,838명으로 감소하고 그후도 비슷한 추세이다. 그것은 일본국적법이 부계혈통주의로부터 부모양계주의로 변경된 결과 나타난 현상이다. 즉 종전 한국적·조선적으로 태어난 자가 85년 이후는 한일 이중국적자로 되어 외국인 출생자수에 안 들어가게 된 것이다.

1998년에 한국국적법도 부모양계주의로 개정된 결과 현재 일본에서의 재일한인출생자는 한국적(조선적)은 약 3,500명, 한일이중국적자는 약 7,000명이다.

이상과 같이 일본에 귀화하거나 일본인과의 국제결혼에서 태어나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계 일본국민은 약 50만명을 넘어 한국·조선적을 가지 특별영주권자 수와 거의 맞먹는다.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한인은 앞으로도 증가할 추세이다.

그 반면에 한국적·조선적을 가진 특별영주권자 수는 8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84년 말에는 642,727명이었지만 99년 말에는 517,787명으로 감소했다).

## 二.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한인의 실상

### 1. 귀화와 창씨

일본의 재일한인에 대한 전후정책은 추방, 차별, 동화라고 평가되어 왔다. 일본정부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재일한인의 권리를 넓은 범위로 제한하여 권리를 얻고 싶으면 일본으로 귀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재일한인의 귀화는 일제하에 외국인이 취임할 수 없는 공무원직에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민족차별을 받기 싫으면 通稱名(일본식성명)의 사용 등 일본인답게 행동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일본으로의 귀화는 일본사회에로의 동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한일조약 체결 당시의 佐藤榮作총리는 한일조약비준승인심의에서 「영원히 영주권, 거주권을 인정하라.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서로가 외국인이라는 것 이것은 한

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것이 외국인으로서 특수한 생활양식을 가지는 것도 장래에 화근을 남기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러한 경우에는 귀화라는 국적취득의 방법도 있으니까」 과 말하였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동화적귀화정책의 결과 현재까지의 귀화자의 대부분은 귀화시에 일본식 성으로 바꾸고 한민족인 것을 숨기고 있다.

창씨개명은 식민지통치 시대의 동화정책의 상징이었고 귀화시의 일본식 성명사용은 창씨개명의 현대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귀화 후는 일본의 국적이 만들어지지만 귀화자가 일본식 성명을 사용하고 한민족이라는 것을 숨기더라도 부모의 성명이 한국식이면 호적을 보면 귀화한 자인 것이 명백해지는 바 귀화 행정실무에서는 귀화자가 귀화 후 사용하는 성을 식민지 통치시대의 창씨로 한 경우에는 부모의 성도 창씨로 기재된다. 창씨를 써서 귀화를 하고 귀화한 후 본적을 옮기면 제적등본에는 귀화한 사실이 남지만 호적등본에는 귀화한 혼적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 2. 일본호적법개정과 외국식성 허용

1985년에는 일본이 여성차별 철폐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적법을 부모양계주의로 개정했다. 그 때 호적법도 동시에 개정되었다. 종전에는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인은 일본민법에는 「부부는 혼인할 때 정하는 바에 따라 부 또는 처의 성을 칭한다」(750조)라고 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적의 성을 외국인 배우자의 성으로 바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일본국민은 일본식성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단일 민족의식을 호적에서 고수해온 것이지만 85년의 호적법 개정으로 외국인과 결혼한 일본국민은 호적의 성을 외국인 배우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일본국적을 취득한 자의 성을 외국인 부 또는 모의 성으로 변경하는 것도 인정되었다.

호적법의 개정은 귀화행정에도 영향을 미쳐 종전과 같이 귀화 후 사용하는 성명을 일본식 성명으로 하도록 강요되는 것은 완화되고 민족명 그대로 귀화하는 자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재일한국인에 대한 기본정책이 동화정책인 것은 변함이 없고 일본사회는 일본국적취득 한국인을 한국계 소수민족으로서 인지하지도 않고 그들의 민족적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한편 일본국적 취득자도 자신을 한국계 소수민족으로 규정하려는 자세가 약하다.

## 三.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재일한인의 실상

### 1. 국적차별과의 투쟁

재일한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 일본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인으로 취급되었지만 일본정부는 재일한인에 대해 1952년 법126호 2조 6항에서 법률에 의하여 따로이 재류자격과 재류기간이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일본에 거주할 수 있게 한 것뿐이고 그 이외에는 일반 외국인에 적용되는 것과 똑 같은 법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되었다.

즉 출입국관리령 및 외국인등록법이라고 하는 2가지 형사경찰적규제입법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이외에도 재일한인은 사회보장, 직업선택 등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불가결한 권리를 일본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대폭 제한 당했다. 사회보장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주택고용공고법, 공영주택법, 주택도시정비공단법, 지방주택공급공사법, 국민연금법, 아동부

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법, 아동수당법 등 일본의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사회보장법이 만들어졌지만 그런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본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제되었던 것이다.

재일한인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게 된 것은 1965년에 체결된 한일법적지위협정이 시행된 이후였고 공단주택, 공영주택, 주택금융공고 등의 대상자로 된 것은 일본이 국제인권규약을 비준한 후의 1980년 4월 이후였다. 또한 국민연금법,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6년 1월 이후이었다(국민연금에 관해서는 국적조항철폐 후의 경과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재일한인 고령자나 장애자가 현재도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일한인 2세의 박종석이 日立製作所의 취직차별의 시정을 요구하여 横浜地方裁判所에 제소한 것은 1970년이었는데 1974년에 내린 동 사건 판결은 「일본의 대기업이 특수한 예외를 제외하고 재일조선인을 조선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채용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현실… 재일조선인에 대한 취직차별, 이것에 동반하는 경제적 빈곤, 재일조선인의 생활고를 원인으로 하는 일본인의 멸시감각은 재일조선인의 많은 사람으로부터 성실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빼앗아 가고 때로는 인격의 파괴로까지 인도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여 박종석이 승소했다.

그후 사법수습생의 채용(1977년), 국공립대학의 교수임용법안 성립(1982), 국공립초·중·고교 교원의 채용, 지방자치체의 공무원채용의 확대 등 공무원직을 중심으로 한 취직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이 서서히 철폐되고 80년대 이후는 일본의 국제화의 영향도 있어 사기업에 있어서의 재일한인의 채용도 점차 문호가 개방되어 왔다.

일본정부의 동화적 귀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일한국인은 일본정부의 국적차별과 싸우면서 한국국적(조선족 포함)을 유지해왔다. 재일한국인의 투쟁과 일본의 국제화에 의해 재일한국인에 대한 국적차별은 차차 개정되어 최근에는 외국인으로서의 지방자치체 참정권을 요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 2. 한국국적보유의 의미

그러나 한국국적을 보유하는 재일한국인도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 80~90%가 식민지배의 유물인 일본이름을 쓰고 있다. 그것은 재일한국인 자신이 식민지 시대를 극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그것은 일본이 식민지지배의 반성에 입각한 과거의 극복을 역사적 과제로 해오지 않은 중죄이기도 하다.

민족과 국적이 다르다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의 다민족국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한국같이 단일민족 국가의식이 강한 나라에서는 민족과 국적이 같다고 생각하기 쉽다. 일본의 동화적 귀화정책은 단일민족 국가의식에 입각하고 있지만 그런 정책이 해방된 지 55년이 지난 지금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일본이 그만큼 한국 식민지 지배의 잘못이나 한국독립에 의한 국적원상회복의 역사적 뜻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일본사회에 살고 있는 재일한인으로서는 일본의 차별에 대한 저항수단으로 한국국적을 유지해 나갈 의미가 크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을 일깨워 주는 역사의 증인으로써 살아갈 길이고 나아가서는 내외국인 평등사회 실현의 선두적 역할을 하는 것에 이어간다.

재일한인은 본국국적의 유지를 본래 기능인 본국과의 법적권리의무 관계보다는 일본의 동화정책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왔다.

동화정책에 대한 민족저항개념을 상징하는 기능으로서의 본국국적(이 경우에는 「한국적」, 「조선적」이라도 同等함)은 광범한 국적차별에 의해 재일한인을 동화시키려고 했던 시대에는 그意義가 커지만 일본의 국제화와 함께 국적차별이 완화되고 85년의 호적법 개정으로 민족姓을 쓴 채로 일본국적 취득의 길이 열린 것 등으로 그意義가 相對化되었다.

그러나 재일한인이 일본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伸張시킨 것은 일본의 국제화를 촉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국제화를 이끌어가는 역할은 앞으로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국제화는 일본뿐만 아니고 한국이나 온 세계의 과제이므로 재일한인으로서는 동서냉전구조가 붕괴되고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국제정치 상황이 없어진 현재에 있어서는 본국 국정참정권의 실현 등 바람직한 본국국민으로서의 법적권리의무나 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내외인 평등정책의 실시 등을 본국정부에 提言하고 이것을 실현해나가는 역할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일본과 본국을 함께 열린 內外人平等사회로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에 본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일본에 永住하는 재일한인의 역사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四. 장래의 과제

위에서 말한 재일한인의 역할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지방자치체 참정권의 획득 등 일본에서의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향상이 앞으로도 필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도 실현해나가야 할 과제이다.

첫 번째는 재일한국인의 남북한 자유왕래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민족적 궁지를 위해 국적차별을 견지면서 본국국적을 유지해온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으로 바꾸면 남북 양 국가에 왕래할 수 있지만 「한국적」이나 「조선적」을 유지하면서 한쪽 국가밖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아이러니칼한 현상을 하루속히 끝내야 한다.

지난 7월의 남북각료급회담에서 「조선적」 동포의 한국방문이 가능해 진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한국적」 동포의 북한 방문도 하루속히 가능해지도록 남북한 정부는 努力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재일한국인사회에 남은 創氏의 극복이다.

일본사회의 심한 민족차별의 결과 재일한국인들은 현재도 일제시대의 残滓인 創氏(通稱名)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재일한국인의 80~90%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일본이름을 쓰고 있고 일본에 귀화한 동포의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일본이름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일본의 민족차별의 탓이기는 하지만 일본인의 차별의식과 역사인식을 시정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재일한국인은 21세기를 눈앞에 둔 이제는 몸에 배인 창씨를 극복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재일한국인 자녀의 민족교육의 재정립이다.

재일한국인의 민족학교는 남북분단의 정치적 이데오로기적 대립을 반영해 왔지만 앞으로는 대립을 넘어서 재일한국인 전체의 학교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사회

와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제화를 추진해야 하는 역할을 가진 존재인 만큼, 앞으로 민족학교는 민족교육과 더불어 인간교육, 국제인 양성에도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한인은 물론 일본사람들도 그 학교에서 배우고 싶어할 정도의 학교로 변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일본 각지에 재일한국인이 중심으로 된 일본과 한반도의 국제교류, 문화센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재일한국인들은 일본지역주민으로서 일본사회에 공헌해 가야할 존재이다. 재일한국인들은 일본 각지에 민단, 조총년의 본부, 지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재일한국인의 공유재산을 살려서 지역의 일본인에게고 개방된 한일, 조일간 교류와 문화활동의 마당으로 만들어 나갈 노력이 절실하다.

그 문화센타는 재일한국인 후손들의 아이덴티티형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고 일본인의 한반도 이해 촉진과 한국인들의 일본 이해 창구 역할도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재일동포의 국적에 의한 갈등의 극복이 필요하다.

해방 후 55년이 지난 현재 일본에는 「한국적」이나 「조선적」을 가진 약 60만명의 동포와 일본에 귀화하거나 일본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것에 의해 일본국적을 취득하게 된 약 60만명의 동포가 있다.

재일동포사회는 현재까지 일본국적을 취득한 동포들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양성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동포들의 민족의식의 각성과 재일동포사회에의 적극 참여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또한 단일민족의식이 강한 일본사회에서 일본국적을 취득한 재일한인을 일본국 내 소수 민족으로서 인지시키고 문화, 언어, 역사 등 그들의 한민족으로서의 민족적 아이덴티티 보호에 필요한 정책수립을 일본정부에 요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에도 본국국민(대한민국 국민,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민, 통일후는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갈 재일한국인에 대해서는 국정참정권의 부여 등 재외국민으로서의 권리획립에도 본국 정부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재외국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만 21세기를 살아 갈 재일한국인 2세, 3세 이후 후손들에게도 한국국민으로서 살아갈 것을 당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화교의 어제, 오늘 및 내일: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여

양 필 승  
건국대학교 교수

한국화교, 즉 한화(韓華)의 역사는 대체로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19세기 후반부터 1910년 한일합병 전후까지 한화의 정착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1931년 만주의 만보산(萬寶山)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빠른 속도로 발전했으나, 이후 1950년 6.25 전란이 발생하기까지 혼란기를, 이어 1970년대 중반까지 정체기를 경험하다, 비록 1997년 한국이 외환위기를 맞이하기 즈음에까지 쇠퇴를 거듭했지만, 오늘날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 한화의 정체성

한국, 즉 남한에 사는 화교의 조상들은 대부분 중국의 산동성에서 건너왔으나 현재 대부분 국적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닌 중화민국, 즉 타이완에 있다. 전체적인 인구도 계속 감소 추세 하에 있어, 현재 약 2만 명이 약간 안되지만, 뚜렷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한 채, 한국에서 유일한 소수민족으로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우선 화교의 정의부터 상당히 복잡하다. 현재 중국 정부에서 취하는 입장은 화인(華人: ethnic Chinese)과 화교(華僑: Chinese sojourners)를 나누는 것이다. 전자는 부계주의 관점에서 부계의 조상이 중국민족으로서 현지의 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집단을 지칭하며, 후자는 현지의 국적 대신 중국의 국적을 유지한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위와 같은 구분에 화예(華裔)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위의 화인 카테고리 중에서 자신을 현지 교민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지 않으면서 단지 문화적으로 자신들의 부계 조상이 중국으로부터 건너왔다고 생각하는 집단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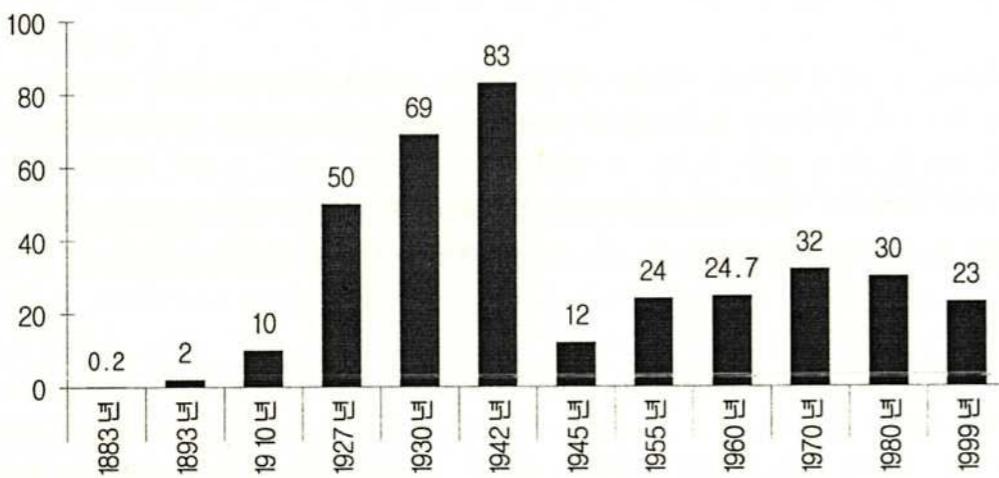
한화는 “현재로서” 위의 세 분류 중 화인과 화교로만 구성되어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특별한 역사적 관계로 말미암아, 이른바 “화예”의 존재는 주·객관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주1). 현재 한국이나 중국 모두 가부장적인 부계 혈통주의를 국적법의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국적 화인의 통계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양국의 국민들 역시 한화나 중국 내 조선족을 서로 자신의 국민 내지 민족으로 주관적 관점에서 인식하기 때문에, 최근에 귀화한 화인을 제외하고, 그들에 관한 파악은 용이하지 않다 (주 2).

최근의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화의 숫자는 23,282명 가량으로, 실제 국내에 거주하는

숫자는 그 보다 작은 18,000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상의 차이는 한국 법무부 발행의 외국인 등록증(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을 소지하면서도 유학 등의 이유로 실제 생활은 해외에서 영위하는 숫자가 상당하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영남일보, 1999년 10월 11일, 10월 15일).

아래의 그림은 한화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래프로서 한화의 역사를 시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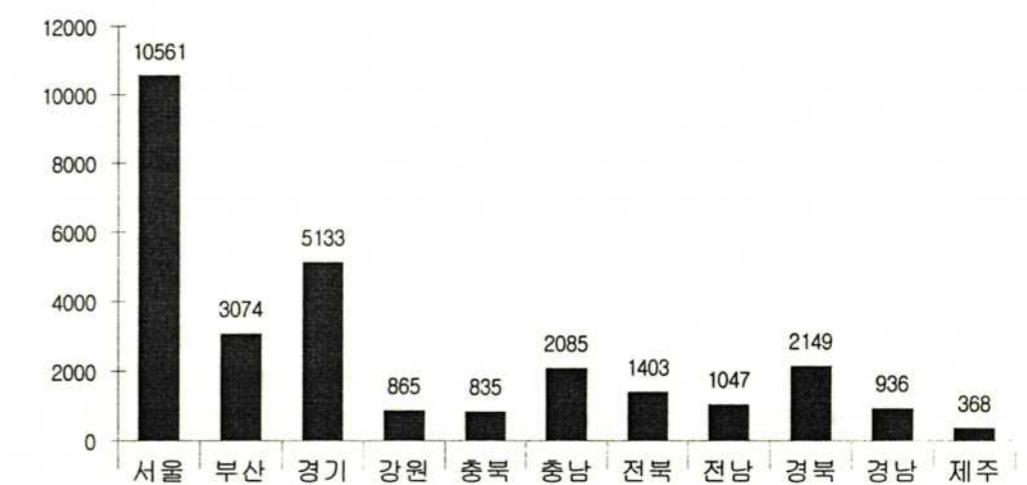
그림 1. 한화의 시기별 인구증감 (단위: 천명)



출처: 潘翊 主編, <<海外華人百科全書>> 三聯書店(香港)有限公司(1998) p.342;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 체류심사과 자료.

지역별로는 서울에 압도적인 숫자가 모여 살고 있다(그림 2). 정착 초기에 인천이 서울보다 화교의 숫자가 많았지만, 이후 줄곧 서울에 화교 인구가 집중되어 왔다. 이는 두 말 할 것이 없이, 한국의 정치, 경제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동시에 화교사회에서는 상업 등 도시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화교를 초대하여 감사를 표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바, 북한의 화교 숫자는 1만 명 내외인 것으로 추측된다(동아일보, 2000년 7월 1일). 해방 전에는 북한의 화교가 남한보다 많았다는 사실은 육로를 통한 이민 경로가 가능하다는 한반도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림 2. 한화의 지역적 분포(1982년)



참조: 1999년 한화의 주요 거주지역은 서울(8,000명), 인천(3,300명), 부산(2,500명), 대구(1,800명) 등이다.

출처: 주한 중국 영사관 자료, 영남일보 1999년 10월 15일.

한화사회는 압도적으로 산동 출신으로 이루어졌다. 1983년 주한 대만대사관의 통계에 의하면, 94.6%가 산동 출신으로, 특히 해외 화인사회의 주류를 형성하는 꾸양동 출신은 1,000명 중 한 사람꼴에 그친다(박은경, 1986: 200). 산동 출신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까닭은 물론 한반도에 대한 지리적인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화의 대규모 이민이 이루어진 20세기 상반기의 산동이 처한 사회경제적인 환경으로부터 비롯됐다(양필승, 1993). 소농경제가 물력의 위기에 처하자 계절이민을 통해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산동의 물력 농민들은 육로로 만주지방이나 해로로 한국과 일본으로 향했던 것이다. 가족단위의 집단이민 대신, 주로 가장이나 아들을 중심으로 개별적이며 한시적인 이주를 선호했다. 그 결과, 초기부터 남자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자연스럽게 대량으로 이루어졌다.

유교사회의 전통으로 말미암아, 중국인 남자와 현지의 한국인 여자가 결혼하는 경우 화교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위는 변함이 없으며, 한국의 국적법은 그 같은 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즉 우리 국적법의 부계주의 때문에, 한국 남자와 중국인 여자가 혼인을 성사시켰을 때, 신부의 국적 취득은 용이할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 실제로 화교 사회에서도 한국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는 매우 경원하면서도, 한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용적이며, 그 같은 사례는 대단히 보편적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남녀 인구의 성비도 극심한 불균형을 이룬다. 무엇보다도 타이완이나 기타 다른 나라로 출국을 선호하고 귀국을 원하지 않은 화교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야기된 현상이다. 분명 한국사회에서 화교에 대한 불평등은 동양사회의 뿌리깊은 남녀

차별 의식과도 관련이 깊다.

한화의 절대 다수가 산동 출신이라는 사실은 국제 화교사회에서 한화의 소외를 설명하는 요인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주류를 이루는 꾸양뚱 등 남부 출신 화교와 한화가 느끼는 언어상의 이질감은 마치 영어와 독일어를 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같다. 전세계 화인 네트워크가 교역이라는 실용적인 종족성(ethnicity)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볼 때, 언어상의 괴리는 한화사회의 침체와 고립을 동시에 설명해 주고 있다.

한화의 종족성은 같은 지역 출신으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동질성을 대체로 잘 유지되고 있고, 특히 폐쇄적인 결혼 습관을 유지함으로써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의 다른 소수민족 사회처럼, 종교가 한화의 결집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못하다. 다수의 화교가 자신을 불교 신자라고 여기지만, 실제로 절에서 불공을 드리는 수는 극히 적다. 기독교는 전체 신자에 비해 교회의 수가 많지만, 이는 매주 예배를 중시하는 기독교의 규칙과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 교세 때문으로 보인다(박은경, 1986: 177). 대체로 전체 화교 사회를 결속시키는 주도적인 종교나 종교 단체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다.

종교 대신 이데올로기가 지금까지 한화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했지만, 급속히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다. 6.25 전란 중에는 200여명 이상이 참전하여, 조상의 군대인 중공군을 대상으로 거의 전몰에 가까운 희생적인 전투를 벌리는 등, 적극적으로 반공대열에 참여했으며, 이는 당시 한반도 상황에서 스스로 조상의 나라인 중국보다는 현재 살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을 자신의 국가로서 선택한 결과였던 것이다(조선일보, 1999. 6. 28). 이후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화 사회의 구심점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타이완 국적을 보지함으로써 이데올로기는 한화사회를 결속시키는 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하고, 한중 사이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상당수의 화교가 대중교류를 통해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특히 대륙으로부터 밀려드는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신이민의 대두로 그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짐에 따라, 이데올로기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급속히 상실해 가고 있다. 아울러 자신들의 원적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산동이기 때문에, 점증하는 고향방문이나 대중 투자로 말미암아 반공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표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에 이르렀다. 마지막으로, 최근 타이완에서 국민당의 장기집권이 종지부를 찍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써, 이데올로기는 한화사회를 결속시키는 역할보다 분열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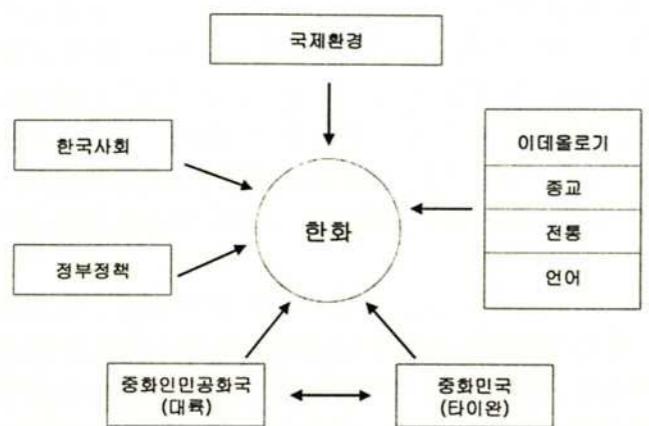
외부인의 시각에서는 한화사회의 단결력이 강한 듯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화교협회 등 기관들의 조직력과 기능이 급속히 쇠퇴하고, 전통적인 분파주의가 아직은 잔존함으로써 결속력의 쇠퇴와 지도력의 취약은 한층 심화되고 있다. 기실 분파주의는 한화의 이주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역사적 산물로서, 노동자 이민이나 상업조직 등이 이른바 방(幫)을 통해 조직화됐던 배경에서 비롯됐다. 이른바 “꿀리”(苦力)이라 불리는 중국인 이민 노동자인 경우, 파두(把頭)라는 우두머리 밑에 10-20명의 “꿀리”가 공동숙식 등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조직화됐던 것이다(박은경, 1986: 89-93). 이 같은 “방”이라는 조직은 현재 그 형태 자체는 사라졌지만, 분파주의의 역사적 뿌리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아직도 미치고 있는 것 같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한화사회의 결속력을 그런대로 유지시키는 기관은 화교학교라 볼 수 있다. 1902년 인천에서 최초로 설립된 이래, 화교학교는 1998년 현재, 28개 초등학교, 4개의 중고등학교에 모두 3,125명이 다니고 있다(Choi, 2000: 8; 우심화, 1999: 112). 학교의 선후배 관계를 통해, 화교사회는 인적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의 교과과정을 통해 전통에 대한 학습을 계속하고 있다. 기실 반공 이데올로기도 화교학교를 통해 강화됐으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내외적인 환경변화는 이데올로기 교육에 상당히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언어, 전통, 이데올로기, 및 종교 등의 각 요소가 차지하는 요소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한화는 나름대로의 종족의 정체성, 즉 종족성(ethnicity)을 유지하는데 성공을 거두었다. 비록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도, 학교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체성과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언어, 전통, 이데올로기 및 종교와 같은 내부적인 요소를 통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펴보았다면, 국제환경, 한국사회와 정부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타이완과 대륙과의 관계 등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어떻게 종족성 유지와 한화사회의 역량이 변화했는지 시기에 따라 살펴보자 한다.

아래의 그림은 외부적 요소와 내부적 요소의 상관관계를 그림을 통해 도식화한 것이다. 국제환경이란 국경을 초월한(cross-border) 한화의 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제국주의나 냉전체제와 같은 요소 따위를 지칭한다. 한국 사회란 화교들의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며 그가 일부로서 속한 현지 사회라는 큰 틀을 지칭한다. 정부정책이란 한화의 출현이란 결국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이란 역사적 과정에서 비롯된 산물이기 때문에, 교육제도, 경제 정책이나 국적법 등에 좌우되기에 매우 중요한 외부적 요소이다. 마지막으로, 대륙과 타이완은 화교의 출신국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된 요소이다. 국제환경이란 요소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동시에, 대륙과 대만의 양안관계, 즉 중국의 현실적 분단관계는 유태인과 같은 다른 이민사회(diaspora)와 그들의 조상나라와의 관계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에 한화를 처하게 만들었다(주 3).

그림 3. 한화사회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 정착기 (1880년대 초반-1900년대 말)

임오군란(1882년)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중국인 이민은 초반기 본국 정부인 청조 정의 영향력에 힘입어 화인들은 한반도에서 자체적인 상권 세력을 형성하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청일전쟁에서의 패배로 청조의 정치적 지배력이 감소됐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와는 경제적 분업을 전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오히려 쇠퇴하는 조선 왕조가 규제보다는 방임하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한화사회는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한반도로의 중국인 이주는 고조선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동양문화라는 큰 틀에서 오히려 중국인 이민은 한반도의 문화에서 동화되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화예라는 개념은 아예 찾아보기 힘들다. 오늘날의 한화는 결국 19세기 후반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한반도로 진주함으로써 함께 몰려온 일단의 상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임오군란 직후, 청과 조선은 이른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朝清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하고, 중국인이 개항장에서 토지와 가옥을 소유,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이 같은 법률적인 보호망을 확보한 중국인들은 인천을 거쳐 항해로, 신의주를 통해 육상으로, 청에서 일본을 통해 다시 한반도로 재이주하는 경로로 각각 밀어 닦쳤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한 청조는 의도적으로 중국인의 대한 이민을 부축이었다.

비록 청일전쟁(1895년)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감소했지만, 열강의 침탈 속에서 조선 정부의 위상은 새삼 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취약했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도록 이끌었고, 화교들의 위상은 다른 외국인과 함께 오히려 우월적인 지위를 누렸다. 특히 화상들의

경제적 지위가 위협받을 때, 직접 영사관이 나서서 보호하는 정도였다. 또한 편법적이지만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가능했다. 이때 화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규제는 이미 법적으로 가능했지만, 우리 정부의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실효가 없었다.

한국 사회와의 관계는 사소한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전통적으로 사농공상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우리 사회는 화상과 견줄 만한 경쟁적 위치에 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외교역을 장악한 화상의 역할을 오히려 필요로 했다. 비록 소매는 우리 상인이 담당하더라도, 도매나 무역은 화상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분업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화교와 우리 사회가 직접 충돌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19세기 말 이래 급속히 성장하는 화교사회는 한일합병 이전에 이미 1만 명 수준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본국 정부인 청조가 초기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청일전쟁 이후에는 급속히 상실했지만 외국인으로서 화교의 지위는 그런대로 확고했다. 우리 정부의 법적 권위는 전혀 미치지 못했으며, 단지 경제적 분업관계로 우리 사회와 한화 사회는 공존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로써, 화교사회는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 발전기 (1910년대 초반-1920년대 말)

청조가 무너지고 정치적 혼란이 가속되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이민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다. 그러나 일본이 마침내 한국을 합병하자,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기 시작했지만, 피압박 민족이란 공통성 때문에 한국 사회와 화교 사회는 그런 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1911년의 신해혁명으로 이천년의 전제정치가 몰락하자, 중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 특히 군벌정치가 등장하면서, 농민에 대한 경제적 수탈은 더욱 심화되고, 많은 농민들은 새로운 땅과 일을 찾아 고향을 떠났다. 자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반도로 이주하는 중국인의 수가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때는 북한에 화교인구가 편중되어, 1920년에 52.4%, 1934년에 64.4%, 그리고 1942년에 82.8%까지 육박했다(박은경, 1986: 75). 한편 화교는 도시 뿐 아니라 농촌 지역에까지도 밀고 들어가, 직업분포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 같은 화교인구의 증가에 두려움을 느낀 일제는 일방적인 규제정책을 펼쳤다. 우선 주거지를 제한하고, 화교들이 강세를 보이던 무역부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동시에 일부 한화들이 항일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자, 한국인과 심리적인 이간정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1927년부터 화교 배척운동을 본격적으로 조작했다.

이 시기에는 한국 사회와의 갈등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특히 산동의 경제불안은 대량 이민을 촉발시켰고 대다수가 농민이었던 화교들은 한국 노동자의 직업을 빼앗아 갔다. 특히 북쪽의 신공업지대에서 한국인과 화교 끌리는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화교의 이민은 본격적인 정주(定住) 이민이라기보다 계절적인 한시성을 띠

고 있었기 때문에, 갈등은 제한적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항일로 서로 연대할 수 있었고, 특히 무역 등 대단위 상업에서 일본인을 누르고 독자적인 상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었던 화상들에 대해서 한국사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지녔다.

국제환경은 중국 화북지방에서 발생하는 유민을 막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 특히 산동과 한반도의 중간에 있는 만주지역은 우리 한민족의 이민과 산동 등지의 화북지역에서 몰려오는 중국인 이주민과 뒤섞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일본은 체계적인 침략은 변경지역으로서 만주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거의 사라질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배경에서 중조(中朝)의 국경은 사실상 뚫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국 이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못됐다. 그리하여 만보산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인 1930년에는 한화의 인구가 7만 여명에까지 달했다 (박은경, 1986: 71-2).

당시 조선에서 최고 납세자가 화상일 정도로, 한화사회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다. 이미 화교에 대한 배척운동이 1927년부터 일기 시작했지만, 아직 한국 사회와의 관계는 무난했다. 그러나 노동자 계층에서 대립과 갈등은 점차 위험수위로 접근하기에 이르렀다. 일제는 화교와 조선인이 연대하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심리적 이간정책을 펼쳤을 뿐 아니라, 화교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각종 정책을 실시했지만, 한화의 사회경제적 위상은 크게 위협받지 않았다.

#### 혼란기 (1930년대 초반-1940년대 말)

실제로는 일제의 이간정책의 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31년의 만보산 사건을 계기로 한국사회와 한화는 갈등관계로 돌입했다. 일제는 더욱 노골적인 통제정책을 실시했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국제관계의 악화는 한화의 위상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는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했다.

만주에서 조선인 이주민과 중국인과의 충돌을 의도적으로 과대포장함으로써 배화감정을 촉발시켜, 무려 700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대규모의 학살이 한반도에서 발생했다(박영석, 1978). 한화 중 현재의 생존 노인 한 사람은 당시를 회고하면, 오줌이 재리다고 할 정도로 화교사회에 미친 영향은 가히 파괴적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화 인구는 무려 40%나 감소했다. 당시 관제어용 언론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이간전략을 펼쳤던 총독부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적이었던 셈이다 (양필승: 1999b).

중일전쟁의 발생으로 국제환경이 악화되자, 한화의 인구는 다시 감소됐으나, 1942년 약 8만 명으로까지 늘었다. 이는 본격적인 일본의 침략을 피해 이주하는 중국인의 이주물결을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되자, 중조 간의 이민 대열도 끊기고 마침내 전쟁이 끝날 무렵인 1945년에는 한화의 인구는 고작 12,648명에 그쳤다.

이 시기는 양적으로 부침이 심한 시기였다. 전후 다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6.25 전란

이 발생하기 직전에는 18,000 명 수준에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인구 증가현상은 중국 대륙에서의 국공 내전발생과 한국에서의 정치 혼란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통제정책이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야기됐다.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상으로서 화상의 능력은 여전히 충분히 발휘될 수 있었다. 특히 한중무역이 한국의 전체 교역에 80-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화의 경제적 지위는 크게 신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혼란기에 한국사회와 한화는 갈등의 관계로 돌입했다. 정부정책은 일제 강점기에는 규제 일변의 정책으로, 해방 후 과도기에는 무정부적 방임상태에서, 한화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침을 거듭했고, 이는 인구의 증감으로 여실히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국제환경은 대체로 꾸준한 이민집단의 조성에 긍정적이었으며, 단지 중일간의 적대관계로 말미암아 이입에 대해서는 간헐적인 차단이 있었다.

#### 정체기 (1950년대 초반-1970년 초반)

한반도에서의 내전 발생과 중공군의 참전은 외부로부터 신규 이민의 이입을 가로막았다. 한화는 단순히 자연 증가 만을 경험했을 뿐, 양안관계의 대립은 질적 성장을 저해했다. 정부 정책은 화교의 지위를 한층 약화시켰으며, 한국사회는 이들에 대해 대체로 무관심했다.

세계가 본격적으로 냉전체제로 돌입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던 6.25 전쟁은 한화사회를 정체기로 이끌었다. 그러나 1976년 32,436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이는 자연증가로 설명될 수 있으며, 외부로부터 신규 이민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다. 무엇보다도 산동으로의 뱃길과 육로가 완전히 차단됐고, 기타 중국 대륙의 다른 지역에서의 이민도 불가능했다. 역으로, 귀향의 길도 막혀, 인구의 감소도 불가능했다. 물론 대륙과의 상거래도 완전히 중단됐다. 왜냐하면 대륙과 타이완의 양안 사이에 이르는 타이완 해협은 매일 포성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냉전체제 아래에서 한국은 본격적인 반공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었다. 비록 산동 출신이지만, 한화는 중화민국의 국적을 지녀야 했으며, 오히려 산동이 속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일제의 잔재인 한화에 대한 차별적 정책은 오히려 강화됐다. 우선 외국인은 공직에 종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이미 2세, 3세를 배출한 화교의 사회적 위상은 제약을 받았다. 외국인 신분으로 200평 이상의 토지는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강세 업종인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났다. 그러나 결정적이었던 타격은 무역업의 몰락이었다. 우선 국제환경이 화상의 무역을 허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부의 외환 규제와 창고 봉쇄령으로 말미암아 화상의 경제적 입지는 대폭 줄었다.

이제 한화의 직업 선택은 매우 단순해졌다. 음식업 만이 살길이 된 셈이며, 스스로 자조적인 표현인 “짜장면의 면발에 내 목숨이 걸린” 상황이 드디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현재 한성화교 학교의 학부모 중 50% 이상이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다. 음식점 다음으로 다수가 종사하는 직종은 잡화상으로 결국 이것도 식당과 관련된 업종이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화는 종족성의 틀에 묶여 특정 직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맛보았다. 어떠한 측면에서는 시대적인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여 자신들 종족성을 최대로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중국인의 무서운 생존력을 과시한 셈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한화에 대해 비동화 정책을 채택했다. 우선 까다로운 귀화정책으로 화교들이 법적으로 외국인 신분을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로써 화교를 외국인의 테두리에 영원히 묶어 놓는데 성공한 것이다. 반면 교육에 대해 자유방임적 차별정책을 취했다. 얼마전까지도 화교학교는 교육기관이 아닌 “임의단체”에 불과했으며, 동시에 대학입학 시에는 학력은 인정해주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화교학생의 학력은 오히려 저하시키도록 작용했다. 결국 화교사회는 한국사회에서 유리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사회와 화교사회는 서로 유리된 채로 지냈다. 특히 아직까지 음식업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과 중화요리에 대한 경쟁력 부재는 직업 면에서 경쟁적인 관계도, 보완적인 관계도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서로 소외되는 관계로 발전했다. 단지 일부 한국인 학생들이 화교학교에서 수학함으로써, 일부 화교 학생이 한국의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서로를 고작 개별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 쇠퇴기 (197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화인구는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제환경의 변화로 미국 등 구미 계통의 국가들이 다원주의에 입각하여 이민의 문호를 열고, 국제정치에서 중국 대륙의 부상으로 인해 중국인에 대한 우호감정이 한층 깊어졌다. 하지만 한국사회와 격리 상태에 있었던 한화는 대다수가 이민의 길을 택했다. 동시에 화교가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했던 요식업에 대해 한국인의 진출이 급증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양 사회 사이의 담은 오히려 무너지게 됐으나, 이는 한화사회의 쇠퇴를 뜻했다.

정부정책의 차별성은 물론 여전했다. 비록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정식으로 선언했지만, 한화의 위상에는 달라질 것이 없었다. 경제적 차별도, 교육적 방임도, 법적 제한도 여전히 계속됐다. 오히려 1977년부터 실시한 부가가치세는 화교사회를 더욱 궁지로 몰았다. 가족중심의 경영체제가 받는 경제적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장 큰 변화는 한반도 밖에서 일어났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정착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이 출신지 이외의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화의 선택은 엑서더스(EXDUS), 대탈출이었다.

우선 국적을 지닌 타이완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했다. 무엇보다도 국민당 정부의 해외 화교에 대한 관대한 대학입학 정책과 장학금 지원이 촉매가 됐다. 학업이 끝난 후 직업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된 한국으로의 귀향을 망설이는 한화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다음으로, 1970년 열린 세계 대박람회를 계기로 일본으로 취업차 출국한 후 그대로 놀러 앉

은 한화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한화들이 가장 선호했고 대규모의 탈출이 이루어진 곳은 미국 등 북미국가와 호주 등지였다. 이들 소위 백인국가들이 다원주의 정책을 채택하면서 동양계 이민에 대해 문호를 활짝 열었던 것이다.

당연히 인구는 계속 감소현상을 보였다. 한국사회와는 더욱 격리됐다. 특히 70년대 남북한이 경쟁적으로 심화시켰던 한국인의 민족주의 감정은 1980년 5.18을 계기로 절정에 달했다. 골목길에서 딱지 치고, 고무줄 하던 화교 아이들은 그 자취를 감추었다. 왜냐하면 한국인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정서에 두려움을 느낀 한화 가정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노는 것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자유방임적인 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비동화적인 자세를 취한 화교학교의 교육 내용은 더욱 사태를 악화시켰다.

한화의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고유 영역인 요식업의 인원 충원이 자체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자, 중화 요식업에로의 한국인의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제 가족 구성원 또는 동향의 화교를 고용인 내지 계승자로 삼았던 인력충원 구조가 절대적 인구의 감소로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한국인을 고용하고 자신들의 기술을 전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종족성을 바탕으로 유지, 강화됐던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드디어 무너지게 된 셈이다.

총체적인 측면에서 한화의 고유 종족성은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민으로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종족 특성을 살렸던 특정 직업에 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정부정책은 커다란 변화 없이 여전히 차별적이며, 한국사회와는 더욱 격리됐다. 그렇지만 이 같은 시련 속에서도 한국화교에게 새로운 봄은 서서히 오고 있었다.

#### 신희망기 (1990년 후반-현재)

한중수교를 계기로 중국인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정책변화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다. 국제환경의 변화는 더욱 그러한 변화를 촉진시켰다. 그러나 양안관계의 복잡성은 한화의 입장을 편안하게만 나누지 않기도 했다. 결국 한화사회의 부흥의 움직임은 한화의 입장에서는 자생적이라기보다 외생적이며, 또한 한국사회의 입장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안으로 들어는 세계화”의 노력이라기보다는 “세계시장에서의 문화 다원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용적 요구” 때문에 야기된 측면이 더욱 크다.

비록 한중수교가 1992년 이루어졌지만, 그로 인한 한화사회에 대해 미치는 임팩트는 1997년 이른바 IMF 위기, 즉 외환위기 이후에야 비로소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한 시차는 한화의 “출신국”(sending country)이 지닌 특수성, 즉 양안의 대립이라는 외부적 현실에서부터 야기됐다. 다시 말해, 한국은 수교 당시 전통적인 우방관계를 지녔던 타이완을 무참히 “버렸으며” 이로 말미암아 타이완 국적을 지녔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력하게 채택했던 한화의 입장을 한층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것이다. 반면 영사관리를 담당해 왔던 타이완의 입지는 좁아졌지만, 그들의 국적으로 말미암아 중국정부도 한화와 적극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형편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은 한화문제에 대해 회피 내지

방임하는 쪽으로 설정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었다. 결국 한화사회, 타이완-대륙의 분단체제, 한국정부의 삼자 사이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여전히 미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한국정부가 대화교 정책에 대해 다소나마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현상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한화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토지소유 상한의 폐지, 화교학교의 지위를 “임의단체”에서 “각종학교”로 승격시키는 등 이전의 차별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물론 개선책 중 일부는 한화 자체에 대한 입장 변화라기보다 우리의 재외동포를 위한 지위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비롯됐다는 한계가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화교를 비롯한 정주외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결정을 꼽을 수 있다(양필승, 1999a). 이는 김대통령의 인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에서 우러나온 결정일 수도 있지만,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운동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한층 강하다. 재일 학자 강재언 교수에 의하면, 일본정부는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운동에 대해 항상 우리 정부의 화교 차별정책을 예로 들며 거부하고 있다(주3).

그러나 한국정부의 전향적 태도는 한국사회에서 일고 있는 세계화라는 역사적 흐름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본의 사례처럼, 세계화 또는 국제화는 “밖으로 나가는 세계화”로 출발하여 점차 “안으로 들어는 세계화”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구체적으로,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일본 시민단체의 적극적 지지를 획득하여 실제로 지위 향상이 이루어진 시점은 바로 그 같은 전환이 발생한 무렵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유일한 소수 민족인 한화의 불평등 문제는 한국사회가 “내부의 세계화”와 함께 “내면의 세계화”를 당면과제로서 삼았을 때 반드시 선결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아울러 국제환경은 한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예를 들어, 화교연구 불모지인 서울에서 세계화인연구학회(International Society of Study on Chinese Overseas)의 세미나가 열리면서, 한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표하는 일군의 국내외 학자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난의 역정을 걸어 온 한화에 대해 문화 다원주의적 관점에서의 학문적 관심과 동시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연대적 지지를 표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1999년 호주의 세계화상대회는 서울에 추진 중인 차이나타운 건설을 위한 설명회를 무료로 마련해 주는 등 특혜를 베풀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형성되는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서 한화에 대한 관심과 우호적 분위기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역사적 흐름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정부와 사회가 “세계시장에서의 문화 다원주의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실용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 즉 자신들의 폐쇄성과 이중성에 대한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분명 한화가 새로운 부흥기를 맞게 된 배경에는 한국사회와 한국정부의 현실적 판단과 요구가 있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경제인협회의 설립(1998년)에 도움을 아끼지 않고, 인천, 제주, 부산 등 여러 지방 단체들이 사라진 차이나타운의 건립을 적극적 추진하는 것은 모두 실용적 요구 때문에 비롯됐다. 무엇보다도 화교자본의 유치를 통해 외환위기를 극복하

고, 아울러 개방사회를 상징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외자유치 전반에 촉매제를 마련하자는 매우 실리적인 계산이 뒤에 숨어 있었다.

그 배경이야 어찌 됐던, 화인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잡지인 아주주간(亞州週刊)이 평한 대로, 지금 “남한의 화인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다”(1999년 8월 9-15일). 실제로 해외로 흘러진 한화 중 일부가 역이민을 통해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사례도 발견된다.

### 새로운 도전과 응전

과연 얼마만큼 희망의 시대를 구가하느냐는 한국사회, 정부정책이나 국제환경, 양안 정부의 태도 등에 달려 있지만, 한화 자신들의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선 자신들이 지난 백년 이상의 기간 중 겪었던 정착기-발전기-혼란기-정체기-쇠퇴기-신희망기로 이어지는 역경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애쓰는 한편 한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도 필요하다. 마치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들이 참정권 확보 등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운동을 전개하듯이, 한국의 화교들도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조직적으로 펼쳐야만 한다.

다행히도 이들과 연대하려는 한국사회의 성원들이 이미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작년 9월 중 한국의 권위자들이 앞을 다투어 한화에 대한 기사와 논평을 실었고, 심지어 어느 신문은 “차이나타운 없는 나라”라는 제하의 논설을 통해 화교사회에 대한 우리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강력히 촉구했다. 결국 한화의 위상제고는 한국사회가 현재 추구하는 세계화를 향한 진전도의 척도가 될 수 있다. 동시에 한화는 새로운 환경변화를 통해 마련된 전환의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일정한 원칙은 상호간에 필요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이른바 공자의 “화이부동”(和而不同) 논리를 제시함으로 이 글을 마칠까 한다. 세계화라는 국제환경의 변화에 힘입어, 한국정부는 물론 대륙이나 타이완 정부가 다같이 협력을 아끼지 않는 가운데, 한국사회와 한화사회가 “함께 조화하면서 서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 <주>

주1) 중국의 어느 학자는 한국은 가장 최초로 중국의 이민에 의해 이루어진 나라라고 주장하는 바, 그 같은 관점에서는 우리 한국인 모두가 화예가 될 수 있다(潘 韶, 1998).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도, 국내의 화교도 그 같은 관점은 전혀 수용하고 있지 않은 듯 하다.

주2) 최근 서울중국학중심과 동아일보, 그리고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Shina와 光播學院의 IMI 연구소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국인 7,000 여명 중 62%가 한화를 중국인으로 보는 반면 92%는 조선족을 중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인 5,000 여명 응답자 중 62 %가 한화를 중국인으로 인식하면서도 67%는 조선족을 한국인으로 보고 있다. ([www.sccs.co.kr](http://www.sccs.co.kr)).

주3) 아래의 시대구분에 사용되는 통계 및 분석은 대체로 한국 화교연구의 기념비적 업적인 박은경 (1986)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주 4) 이러한 까닭에 강교수를 중심으로 재일 한국인들이 최근 한화를 연구하는 모임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公明党・保守党

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案

右の議案を提出する。

平成十二年七月五日

提出者

冬柴鐵三

松浪健四郎

- 주요 참고문헌
- 박영석 (1978) 만보산 사건 연구. 서울: 아시아문화사
- 박은경 (1986) 한국 화교의 종족성. 한국연구원
- 양필승 (1999a) "차이나타운 조차 없어도" 뉴스플러스. 1999. 7. 29.
- \_\_\_\_\_.(1999b) "한화와 갈등, 일제의 이간책으로 시작됐다" 뉴스메이커. 327호.
- \_\_\_\_\_. (1995)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문화정치학. 천주교 부산교구 부산사회사 연구소 주최. 종교, 민족, 그리고 갈등. 세미나 발표문. 77-83쪽.
- \_\_\_\_\_. (1993) 변경-개척-이민의 땅, 만주. 중국연구. 1.4: 22-45.
- 우심화 (1999) 한국 화교교육의 실태와 전망. 서울中國學中心 주관. 화교네트워크와 차이나타운 심포지움 발표문. 111-212 쪽.
- 潘 鏞 (1998) 海外華人百科全書. 三聯書店. 香港.
- Choi, Sheena (2000) Educational Choices of Ethnic Chinese Minorities in Korea: Trends and Policy Implication. From Proceedings for ISSCO Seoul Conference 2000.
- Norbu, Dawa (1992) Culture and the Politics of Third World 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Sinn, Elizabeth ed. (1998) The Last Half Century of Chinese Overseas.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 Wu, D.Y.H. & McQueen, H. & Yamamoto Y. (1997) Emerging Pluralism in Asia and the Pacific. Hong Kong: Hong Kong Institute of Asia-Pacific Studies,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Young, Crawford ed. (1993) The Rising Tide of Cultural Pluralism: The Nation-State at Bay Madison: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赤羽一嘉	市川雄一	太田昭宏	漆原良夫	江田康幸	池坊保子	石井啓一
赤松正雄	河上翠雄	斎藤鉄夫	神崎武法	坂口力	東順治	若松謙維
高木陽介	久保哲司	谷口隆義	北側一雄	田端正廣	樹屋敬悟	丸谷佳織
山名靖英	谷口	久保哲司	遠藤和良	遠藤和良	赤羽一嘉	赤松正雄
若松謙維	高木陽介	高木陽介	高木陽介	高木陽介	高木陽介	高木陽介

平成十二年七月五日

公明黨 国会对策委員長

國會對策委員長

事務局長

羽鳥晴久



議員提案案

議案件名　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  
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案

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案要綱

第一 総論

一 目的

この法律は、永住外国人に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を付与するため、地方自治法及び公職選舉法の特例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ものとすること。

二 永住外国人の定義

この法律において「永住外国人」と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いうものとすること。

- 1 ✓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別表第一の上欄の永住者の在留資格をもって在留する者
- 2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に定める特別永住者

第二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に関する地方自治法及び公職選舉法の特例

申請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た年齢満二十歳以上の永住外国人で引き続き三箇月以上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ものは、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を有する

## 議員提出議案

議案件名

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案

保守党 国会対策委員長 二階 俊博

事務局長 今野 竹治

(第一条関係)

2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は、永久に据え置くものとし、かつ、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並びに市町村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を通じて一の名簿とする。

3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毎年三月、六月、九月及び十二月（第九条第一項及び第十条第一項において「登録月」という。）並びに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を行う場合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を行うものとする。

4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磁気ディスク（これ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確實に記録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物を含む。以下同じ。）をもつて調製することができる。

5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を行う場合において必要があるとき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抄本（前項の規定により磁気ディスクをもつて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を調製している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あつては、当該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記録されている事項の全部又は一部を記載した書類。第十六条第二項において同じ。）を用いることができる。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記載事項等）

第五条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は、選挙人の氏名、住所、性別及び生年月日等の記載（前条第四項の規定

ものとすること。  
（第三条関係）

第三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及び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投票等に関する公職選挙法の特例

### 一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

（第四条関係）

- (1)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調製及び保管を行うものとすること。
- (2)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は、永久に据え置くものとし、かつ、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並びに市町村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を通じて一の名簿とするものとすること。
- (3)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毎年三月、六月、九月及び十二月（以下「登録月」という。）並びに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を行う場合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を行うものとすること。
- (4)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は、磁気ディスク（これに準ずる方法により一定の事項を確實に記録しておくことができる物を含む。）をもつて調製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すること。

3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市町村の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職権により登録されるべき者を調査し、その者を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するための整理を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七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次条の規定による申請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を行うものと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り登録された者（当該登録の際登録されるべきでなかつた者及び当該登録の後日本の国籍の取得、退去強制その他の事由により永住外国人でなくなつた者を除く。）についての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の職権により行うものとする。

第八条 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する年齢満二十年以上の永住外国人で、この条の規定による申請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た者（当該登録の際登録されるべきでなかつた者及び当該登録の後日本の国籍の取得、退去強制その他の事由により永住外国人でなくなつた者を除く。）以外のもの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文書で、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の申請をすることができる。

により磁気ディスクをもつて調製す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あつては、記録）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は、市町村の区域を分けて数投票区を設けた場合には、その投票区ごとに編製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様式その他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被登録資格等）

第六条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は、年齢満二十年以上の永住外国人（第二十六条、公職選挙法第十一  
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五十二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九十四号）第二十八条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しないこととされている者を除く。第八条において同じ。）であつて、当該市町村の区域内に引き続き二箇月以上住所を有するもの（外国人登録法（昭和二十七年法律第二百一十五号）第四条第一項に規定する外国人登録原票に登録されている居住地が当該市町村の区域内にあり、かつ、同項の登録の日（同法第八条第一項の申請に基づく同条第六項の居住地変更の登録を受けた場合には、当該申請の日）から三箇月以上経過している者に限る。）について行う。

2 前項の三箇月の期間は、市町村の廃置分合又は境界変更のため中断されることがない。

選挙に関する事務を管理する選挙管理委員会が定める期間、市役所、町村役場又は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が指定した場所において、同条の規定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した者の氏名、住所及び生年月日を記載した書面を縦覧に供さなければならない。

## 2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縦覧開始の日前三日までに縦覧の場所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異議の申出)

第十一條 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選挙人は、当該都道府県の区域内の市町村の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に関し不服があるときは、縦覧期間内に、文書で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異議を申し出ることができる。

2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前項の異議の申出を受けたときは、その異議の申出を受けた日から三日以内に、その異議の申出が正当であるかないかを決定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異議の申出を正当であると決定したときは、その異議の申出に係る者を直ち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し、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から抹消し、その旨を異議申出人及び関係人に通知し、併せてこれ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異議の申出を正当でないと決定したときは、直ちにその旨を異議申出人に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登録)

第九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登録月の一日現在により、第六条の規定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資格を有する者を、申請又は職権により、当該登録月の二日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登録月の一日から七日までの間に選挙の期日があ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を行う場合その他特別の事情がある場合に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登録の日を変更することができる。

2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を行う場合においては、当該選挙に関する事務を管理する選挙管理委員会が定めるところにより、第六条の規定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資格を有する者を、申請又は職権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縦覧)

第十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前条第一項の規定による登録については登録月の三日から七日までの間（同項ただし書に規定する場合には、政令で定める期間）、同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登録については当該

より公職の候補者であつた者の当選の効力を争う数個の請求、第二百十一条の規定により公職の候補者等であつた者の当選の効力を争う数個の請求又は選挙の効力を争う請求とその選挙における当選の効力に關し第二百七条若しくは第二百八条の規定により「これを争う請求」とあるのは、「の縦覧に係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への登録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からの抹消に關し争う数個の請求」と読み替えるものとする。

#### (補正登録)

第十三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第九条の規定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をした日後、当該登録の際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べきであつた者で引き続き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資格を有するものが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ないことを知った場合には、その者を直ち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し、その旨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表示及び訂正等)

第十四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が第二十六条、公職選挙法第十二条第一項若しくは第二百五十二条若しくは政治資金規正法第二十八条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し

3 行政不服審査法（昭和三十七年法律第百六十号）第十五条第一項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及び第六号並びに第四項、第二十一条、第二十五条、第二十六条、第三十一条、第三十六条、第三十九条並びに第四十四条の規定は、第一項の異議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4 公職選挙法第二百二十四条の規定は、第一項の異議の申出について準用する。

#### (訴訟)

第十二条 前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不服がある異議申出人又は関係人は、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を被告として、決定の通知を受けた日から七日以内に出訴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訴訟は、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の所在地を管轄する地方裁判所の専属管轄とする。

3 前項の裁判所の判決に不服がある者は、控訴することはできないが、最高裁判所に上告することができ

る。

4 公職選挙法第二百十三条、第一百十四条及び第二百十九条第一項の規定は、第一項及び前項の訴訟について、準用する。この場合において、同条第一項中「一の選挙の効力を争う数個の請求、第一百七条若しくは第二百八条の規定により一の選挙における当選の効力を争う数個の請求、第二百十条第一項の規定に

つたとき。

一一

- 二 当該市町村を包括する都道府県の区域外に住所を移したこと又は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つたことを知つたとき。

- 三 前条第一項の表示をされた者が当該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つた日後四箇月を経過するに至つたとき。

- 四 登録の際に登録されるべきでなかつたことを知つたとき。

(通報及び閲覧等)

第十六条 市町村長及び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永住外国人である選挙人の住所の有無その他選挙資格の確認に関し、その有している資料について相互に通報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の期日の告示の日から選挙の期日後五日に当たるまでの間を除き、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抄本を閲覧に供し、その他適当な便宜を供与しなければならない。

3 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選挙人は、当該都道府県の区域内の市町村の永住外国人選挙人名

なくなつたことを知つた場合又は当該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つたことを知つた場合（当該市町村を包括する都道府県の区域外に住所を移したこと又は国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つたことを知つた場合を除く。）には、直ち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その旨の表示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の記載内容（第四条第四項の規定により磁気ディスクをもつて調製す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あっては、記録内容）に変更があったこと又は誤りがあることを知つた場合には、直ちにその記載（同項の規定により磁気ディスクをもつて調製す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あっては、記録）の修正又は訂正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登録の抹消)

第十五条 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当該市町村の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について次の場合に該当するに至つたときは、これらの者を直ち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から抹消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第一号から第四号までに掲げる場合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旨を告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死亡したこと又は日本の国籍の取得、退去強制その他の事由により永住外国人でなくなったことを知

行政手続法（平成五年法律第八十八号）第二章及び第三章の規定は、適用しない。

（行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の制限）

第二十条 この節の規定によ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の規定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の申請等の時間）

第二十一条 第八条の規定によ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の申請、第十六条第三項の規定によ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修正に関する調査の請求及び第十八条の規定による住所を有しなくなる旨の届出は、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の職員につき定められている執務時間内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政令等への委任）

第二十二条 この節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が他の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移した場合における市町村間の通知その他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關し必要な事項は、政令及び総務省令で定める。

第二節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投票等

第二十三条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ときは、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脱漏、誤載又は誤記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修正に關し、調査の請求をすることができる。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再調製）

第二十四条 天災事変その他の事故により必要があるときは、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は、更に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を調製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十五条 前項の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調製、縦覧及び確定に関する期日及び期間その他その調製について必要な事項は、政令で定める。

（住所を有しなくなる旨の届出）

第二十六条 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で当該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属する市町村の区域内に住所を有しなくなるもの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あらかじめ、その旨を当該市町村の選挙管理委員会に届け出なければならない。

（行政手続法の適用除外）

第二十七条 この節の規定によ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その他公権力の行使に当たる行為については、

は「収容され若しくは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昭和二十六年政令第三百十九号）の規定により収容され若しくは留置されている」とと、同法第五十五条及び第五十六条中「在外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同法第六十一一条第二項中「選挙権を有する者」とあるのは「選挙権を有する者（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者を除く。）」と、同法第六十一一条第一項及び第八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七十六条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同法第七十五条第三項中「選挙長は、当該選挙の選挙権を有する者」とあるのは「選挙長は、当該選挙の選挙権を有する者（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者を除く。）」と、同法第七十六条、第八十六条の四第二項、第一百七十二条第一項並びに第一百九十四条第一項第三号及び第四号中「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する。

（選挙の一部無効に係る区域における選挙人に関する特例）

第二十四条 選挙の一部無効に係る区域における選挙人に関する公職選挙法第二百五条第四項（同法第二百九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第二百五条第四項中「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裁決又は判決の直前（判決の場合にあつては高等裁判所の判決の基本たる口頭弁論終結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投票等に関する特例）

第二十三条 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関する公職選挙法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第三十七条第二項中「選挙権を有する者」とあるのは「選挙権を有する者（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者を除く。）」と、同法第三十八条第一項及び第二項中「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同法第四十二条第一項本文中「在外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同項中「決定書又は確定判決書」とあるのは「決定書若しくは確定判決書又は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の規定により職権により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るべき旨の決定書若しくは確定判決書」と、同条第二項中「在外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同法第四十四条第一項中「選挙人名簿又はその抄本」と、「当該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当該選挙人名簿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若しくはその抄本」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若しくはその抄本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第十九条第三項」とあるのは「第十九条第三項又は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四条第四項」と、同条第二項中「選挙人名簿又はその抄本」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若しくはその抄本」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若しくはその抄本」と、同法第四十九条第一項第三号中「収容されている」とあるの

第二十六条 前条の罪を犯し罰金の刑に処せられた者は、その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五年間（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者については、その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るまでの間）、この法律に規定する選挙権並びに公職選挙法に規定する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

2 前条の罪を犯し禁錮の刑に処せられた者は、その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刑の執行を終わるまでの間若しくは刑の時効による場合を除くほか刑の執行の免除を受けるまでの間及びその後五年間又はその裁判が確定した日から刑の執行を受けることがなくなるまでの間、この法律に規定する選挙権並びに公職選挙法に規定する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

3 裁判所は、情状により、刑の言渡しと同時に、第一項に規定する者に対し同項の五年間若しくは刑の執行猶予中の期間についてこの法律に規定する選挙権並びに公職選挙法に規定する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旨の規定を適用せず、若しくはその期間のうちこれを適用すべき期間を短縮する旨を宣告し、又は前項に規定する者に対し同項の五年間若しくは刑の執行猶予の言渡しを受けた場合にあってはその執行猶予中の期間のうちこの法律に規定する選挙権並びに公職選挙法に規定する選挙権及び被選挙権を有しない旨の規定を適用すべき期間を短縮する旨を宣告することができる。

（直前に当該選挙の一部無効に係る区域において行われた選挙の当日投票できる者であつた者）とあるのは、「当該選挙が衆議院議員又は参議院議員の選挙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第一項の規定による決定、裁決又は判決の直前（判決の場合にあつては、高等裁判所の判決の基本たる口頭弁論終結の直前。以下この項において同じ。）に当該選挙の一部無効に係る区域において行われた選挙の当日投票できる者であつた日本国民と、当該選挙が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である場合においては同項の規定による決定、裁決又は判決の直前に当該選挙の一部無効に係る区域において行われた選挙の当日投票できる者であつた日本国民及び同項の規定による決定、裁決又は判決の直前に当該選挙の一部無効に係る区域において行われた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の当日投票できる者であつた外国人」とする。

### 第三節 罰則

#### （詐偽登録）

第二十五条 詐偽の方法をもつて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をさせた者は、六月以下の禁錮又は三十万円以下の罰金に処する。

（詐偽登録に係る处罚者に対する選挙権及び被選挙権の停止）

2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永住外国人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この法律及び地方自治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長、副知事若しくは助役、出納長若しくは収入役、選挙管理委員若しくは監査委員又は公安委員会の委員の解職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3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永住外国人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教育委員会の委員の解職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 (条例の制定及び監査の請求並びに解散及び解職の請求等に関する特例)

第三十条 条例の制定及び監査の請求並びに解散及び解職の請求に関する地方自治法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第七十四条第四項（同法第七十五条第五項、第七十六条第四項、第八十条第四項及び第八十一条第二項）（これららの規定を同法第一百九十二条の六第一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第八十六条第四項（同法第二百九十二条の六第一項及び地方教育行政の組織及び運営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一年法律第二百六十二号）第八条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第一百九十二条の六第一項及び第五項並びに市町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昭和四十年法律第六号）第四条の二第十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公職選挙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二百号）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選挙人名簿の登録が行な

#### (住所を有しなくなる旨の届出を怠つた場合の過料)

第二十七条 正当な理由がなくて第十八条の規定による届出をしない者は、五万円以下の過料に処する。

2 前項の規定による過料の裁判は、簡易裁判所がする。

#### 第四章 直接請求等に関する地方自治法等の特例

##### (条例の制定及び監査の請求)

第二十八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永住外国人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この法律及び地方自治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条例（地方税の賦課徴収並びに分担金、使用料及び手数料の徴収に関するものを除く。）の制定又は改廃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2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永住外国人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この法律及び地方自治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事務の監査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 (解散及び解職の請求)

第二十九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永住外国人た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住民は、この法律及び地方自治法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属する普通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解散を請求する権利を有する。

律第三十条」と、同条第七項中「公職選挙法」とあるのは「公職選挙法及び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とする。

(被選挙権等に関する特例)

第三十一条 被選挙権等に関する地方自治法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法第十九条第一項中「選挙権を有する者」とあるのは「選挙権を有する者（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 号）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者を除く。）」と、同法第九十四条及び第一百八十二条第一項（同法第一百五十二条の二十第五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選挙権を有する者」とあるのは「選挙権を有する者（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の規定により選挙権を有する者を除く。）」とする。

(町又は字の区域の新設等の案の変更の請求に関する特例)

第三十二条 町又は字の区域の新設等の案の変更の請求に関する住居表示に関する法律（昭和三十七年法律第一百十九号）第五条の二第八項の規定の適用については、同項中「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する。

われた日において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とあるのは「公職選挙法（昭和二十五年法律第百号）第二十二条の規定による選挙人名簿の登録が行われた日において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及び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 号）第九条の規定によ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の登録が行われた日において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者」と、地方自治法第七十四条の二第一項（同法第七十五条第五項、第七十六条第四項、第八十条第四項及び第八十一条第二項（これらの規定を同法第一百九十二条の六第一項及び第五項並びに市町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第八条の二第十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並びに第一百九十二条の六第一項及び第五項並びに市町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第四条の二第十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中「選挙人名簿」とあるのは「選挙人名簿又は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と、地方自治法第八十五条中「公職選挙法」とあるのは「公職選挙法及び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と、同法第二百九十二条の六第一項中「第二編第五章（第八十五条を除く。）」とあるのは「第二編第五章（第八十五条を除く。）及び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

## (事務の区分)

第三十七条 この法律の規定により市町村が処理することとされている永住外国人選挙人名簿に関する事務は、地方自治法第二一条第九項第一号に規定する第一号法定受託事務とする。

## (政令等への委任)

第三十八条 この法律に定めるもののほ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する必要な事項は、政令及び総務省令で定める。

## 附 則

## (施行期日)

第一条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ただし、第九条第二項、第二十三条（公職選挙法第三十七条第一項、第六十一条第二項及び第七十五条第三項に係る部分を除く。次条第一項において同じ。）、第三十条、第三十二条及び次条の規定は、公布の日から起算して一年六月を超えない範囲内において政令で定める日から施行する。

## (適用区分)

## 第五章 雜則

## (特別区に関するこの法律の適用)

第三十三条 この法律中市に関する規定は、特別区に適用する。

## (地方公共団体の組合の特例)

第三十四条 地方公共団体の組合の選挙については、法律に特別の定めがあるものを除くほか、この法律中市町村に関する規定を適用する。

## (財産区の特例)

第三十五条 財産区の議会の議員の選挙については、地方自治法第一百九十五条の規定による条例で規定するものを除くほか、この法律中町村の議会の議員の選挙に関する規定を適用する。

## (指定都市に対する適用関係)

第三十六条 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並びに地方自治法第一百五十二条の十九第一項の指定都市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に関するこの法律の規定を適用する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市においては、区を市とみなし、区の選挙管理委員会を市の選挙管理委員会とみなす。

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号）

（公職選挙法の一部改正）

第四条 公職選挙法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十一条第一項中「この法律の定める選挙に関する犯罪に因り」を「この法律、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号。以下「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という。）又は政治資金規正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九十四号）の定める犯罪により」に改め、「第二百五十二条」の下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十六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第二十八条」を加え、同条第三項中「又は第二百五十二条」を「若しくは第二百五十二条又は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六条」に改める。

第二十一条第一項中「又は政治資金規正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百九十四号）」を「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六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に改める。

第二条 第九条第二項及び第二十三条の規定は、前条ただし書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日（以下「施行日」という。）後その期日を告示される選挙について適用し、施行日までにその期日を告示された選挙につ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2 第三十条の規定は、施行日において現にその手続が開始されている直接請求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地方自治法の一部改正）

第三条 地方自治法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一百二十七条第一項中「第二百五十二条」の下に「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号）第二十六条」を加える。

第一百四十三条第一項中「第二百五十二条」の下に「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号）第二十六条」を加える。

第一百八十四条第一項中「同法第二百五十二条」を「第二百五十二条、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号）第二十六条」に改める。

別表第二に次のように加える。

第五条 政治資金規正法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二十八条第一項中「被選挙権」の下に「並びに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 号）に規定する選挙権」を加え、同条第二項中「被選挙権」の下に「並びに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に規定する選挙権」を加え、同条第四項中「又は第二百五十二条」を「若しくは第二百五十二条」又は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第二十六条」に改める。

（漁業法の一部改正）

第六条 漁業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二百六十七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九十四条第一項の表第二十四条第一項の項を次のように改める。

第二十四条第一項	日本国民たる選挙人又は外国人たる当該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選挙人	選挙人名簿の登録に關し不服がある	選挙人名簿に脱漏又は誤載があると認める

第二十四条第一項中「選挙人は」を「日本国民たる選挙人又は外国人たる当該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選挙人は」に改める。

第二十七条第一項中「第一百五十二条」の下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六条」を加える。

第二十九条第三項中「選挙人は」を「日本国民たる選挙人又は外国人たる当該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選挙人は」に改める。

第八十六条の八第一項及び第二百三十七条の三中「第二百五十二条」の下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六条」を加える。

第一百五十二条中「を除く。」の下に「又は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五条の罪」を加える。

第二百五十二条の見出し中「因る」を「よる」に改め、同条第一項及び第二項中「被選挙権」の下に「並び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に規定する選挙権」を加える。

第二百五十三条の二第一項及び第二百五十四条中「を除く。」の下に「若しくは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五条の罪」を加える。

（政治資金規正法の一部改正）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改正)

第七条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六年法律第八十八号）の一部を次のように改正する。

第十一条の表第十一条第二項の項を次のように改める。

第十一条第二項		この法律、永住外国人に対する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権等の付与に関する法律（平成十二年法律第一号。以下「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という。）又は政治資金規正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百九十四号）の定める选举権法第二十六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第二十八条	
第十一条の表第十一条第二項の項を次のように改める。		農業委員会等に関する法律（昭和二十六年法律第八十八号）の定める選挙にに関する同法第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五十二条	

第十四条第一項	日本国民たる選挙人又は外国人たる当該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選挙の選挙人	選挙人名簿の登録に関し不服がある	選挙人名簿に脱漏又は誤載があると認める
第十一条の表第十一条第二項の項を次のように改める。	選挙人	選挙人	同法第十二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二百五十二条

第九十四条第一項の表第八十六条の八第一項の項及び第一百三十七条の三の項中「又は政治資金規正法」を「、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六条又は政治資金規正法」に改め、同表第一百五十一条の項中「第二百五十二条の罪を除く。」の下に「又は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五条の罪」を加え、同表第一百五十二条第一項の項及び第二百五十二条第二項の項を次のように改める。

この章に掲げる罪（第二百四十二条、第二百四十五条、第二百五十二条の二、第二百五十二条の三及び第二百五十二条の罪を除く。）	漁業法第九十四条において準用する第十六条に掲げる罪（第二百四十五条の罪を除く。）
被選挙権並び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に規定する選挙権	被選挙権
被選挙権並び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に規定する選挙権	被選挙権
被選挙権並びに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に規定する選挙権	被選挙権

第九十四条第一項の表第二百五十三条の二第一項の項及び第一百五十四条の項中「第二百五十二条の罪を除く。」の下に「若しくは永住外国人地方選挙権法第二十五条の罪」を加える。